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91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3. 강남구청장(총무과)

나. 상정의결

-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1. 27.)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이호현)

가. 제안이유

- 강남구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 집행기관 일반직 6급 이하 소계 : 1,640명 → 1,637명(△3명)
 - 집행기관 본청 일반직 5급 소계 : 40명 → 42명(+2명)
 - 집행기관 본청 일반직 4급 소계 : 6명 → 7명(+1명)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직급별 정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 증가(비용추계서 첨부)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 (2023.10.13. ~ 10.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이며, 개정 사항은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 “별표 3”의 정비와 관련한 것임.
 -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제2항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등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하였음.
- 본 조례의 제4조의 “별표 3”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한시기구 설치로 정원의 전체적인 증감없이 전체 정원 1,776명(구청 1,731명, 의회사무국 45) 내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개정 세부내용은 신·구 별표 대비표와 같이 집행기관 4급을 1명(6명+1명), 5급 2명(40명+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640명에서 3명을 감원하여 1,637명으로 하려는 것임.
 - 6급 이하의 정원 증감은 9급 3명으로, 향후 집행부 자체 규칙으로 정비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서는 제출한 비용추계서와 같이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추계는 9급 3명의 인건비(137,920천원)를 감액하고, 4급 1명과 5급 1명의 인건비(335,286천원)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2024년 기준 1억9,736만6천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로 인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큰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